군산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

[경암부향 · 산북부향1,2,3,4차 · 신풍부향 · 조촌부향]

입주자격완화 · 선착순동호지정 · 선계약후검증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07.30.(목) -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사항은 모집 신청 관련 매우 중요한 내용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및 입주자격 완화 등 주요사항 안내

- 금회 모집은 미계약된 임대주택에 대하여 신청자가 희망단지의 **주택을 미리 열람 및 원하는 동호를 정하고 신청장소에 방문하여 선착순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신청자의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① **계약 당일 오전 10시 전까지 신청장소에 도착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순번을 정한 후 그 순번대로 동호지정 및 계약을 체결**하며, ② **오전 10시 이후 도착하는 경우 오전 10시 이전 신청자의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미계약 동호에 대하여 도착 순서대로 동호지정 및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차례 입주 및 퇴거가 진행된 주택이므로 사용으로 인한 노후 및 변색, 기타 훼손 등이 있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으며, 계약시 현 상태대로 계약이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신청 및 계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용감 등을 제외한 기능상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계약 후 관리사무소 또는 바로처리센터(☎1670-8572)에 보수 요청을 해주시면 공사 내부기준에 따라 보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6.08.12(수) 10:00 ~ 모집완료시까지**

- **공급형별 모집완료 시 접수마감하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공지사항에 별도 안내합니다.**
- **계약체결 가능시간 : 10:00~16:00(공휴일 및 휴게시간 11:40 ~ 13:00 제외)**

* **선착순 계약 첫째날('26.08.12)은 대기시간이 상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충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현장접수만 가능)**

신청요일	신청장소	신청문의
2번째, 4번째 주 수요일	군산임대상담실(군산시 동아로 12, 산북부향1차 108호)	☎1600-1004
2번째, 4번째 주 수요일 제외 평일	익산권주거복지지사(익산시 선화로3길 16-10, 5층)	

* **1번째 주는 그 달의 첫 번째 목요일이 포함된 주를 말하며, 선착순 계약 첫째날 8월 12일(수)은 그 달의 2번째 주 수요일이므로 군산임대상담실에서 신청 접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절차(요약)

계약 전		계약 당일			계약 이후 약 6주 소요	부적격 관련 소명통보시	적격 관련 입주안내시
주택 열람 →	동호 확인 →	신청장소 방문 →	동호 지정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자격검증 및 검증결과 통보 →	소명 후 입주 또는 해약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 선정방법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체결자를 대상으로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 여부, 자산(자동차)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하며, 부적격자의 경우 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취소 되어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 동호지정 당일 **① 오전 10시 전까지 접수 장소에 도착하여 동호지정 접수 명부에 서명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일 순번으로 간주하며,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② 오전 10시 이후 도착한 경우 오전 10시 이전 접수된 자의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미계약 세대에 대해 동호지정 명부 접수 순번대로 동호지정 및 계약 체결**합니다.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 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업무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순번 호명 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을 경우 당일 참가 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하며, 마지막 순번 이후 경합 발생 시 최초 부여받은 동호지정 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합니다.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계좌를 개별 안내드리며, 당일 계약금이 미입금될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자동 신청 무효가 되어 등록명부에서 삭제 및 동호지정 취소처리가 됩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시간은 당일 10:00 ~ 16:00까지이며, 16:00 이후에는 계약 불가**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을 해지합니다.
- 동호지정 계약 체결 후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는 계약취소 후(해약신청 필요) 위약금 공제 없이 계약금은 반환**됩니다. **단, 입주 전 계약자가 단순 변심 등에 의해 계약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며, 납입한 계약금에 대하여 위약금 공제 후 반환됩니다. (반환 시 이자 없음)**

- 금회 공고는 아래와 같이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구 분	완 화 내 용
소득 요건	· **소득요건 배제**
자산 요건	· **자산요건 배제(단,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일 것)**
무주택 요건	·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 간주** ·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자격검증 범위에 속하는 세대원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① 주택건설지역 : 군산시 ② 연접지역 : 김제시, 익산시, 서천군** · **(소형·저가주택)**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7의3) * 수도권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입주자격 완화조건 입주 시 재계약 유의사항**

-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관련 재계약 허용 여부

기준초과자의 1회차 재계약	기준초과자의 2회차 재계약
소득·총자산 요건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 허용(임대조건 할증 X)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총자산 요건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 허용(임대조건 할증 X)

- 주택 보유 요건 완화 관련 재계약 허용 여부

주택보유자의 1회차 재계약	주택보유자의 2회차 이후 재계약
공고일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재계약 허용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재계약 거절 또는 계약해지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동차가액) 등 판단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6.07.30) 이후 및 계약체결 당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해당 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LH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계약체결 당일 필요서류 일체를 제출 및 계약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은 불가**합니다.

■ **해당 주택의 입주가능일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이후로 정확한 입주시기는 계약 당일 확정 안내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주택·분양권 등 소유 여부, 자동차가액)을 검증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최종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소명기간 내 입주자격을 소명하여야 하고, 부적격 사유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부적격으로 인한 해지 시 계약금은 이자 없이 반환(위약금 면제)하며, 단, 부적격자가 아닌 자가 **단순 변심에 의해 입주 전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 **계약 당일 16시까지 공사 지정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 시 계약은 취소**됩니다.(현금수납 불가)

■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았으나, 순번 호명 시 자리이탈 등으로 순번을 놓쳤을 경우 대기순번의 마지막 순번으로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하며, 마지막 순번 이후 경합 발생 시 최초 부여받은 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합니다.

■ **동호 지정 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동호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 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신청자가 주택 동호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전 주택 열람을 운영합니다.**

※ 주택열람 운영기간 ※	2026.08.03(월) ~ 모집완료시까지 10시 ~ 16시 (공휴일 및 점심시간 11:40~13:00 제외)

■ **입주자격 검증** * 최초 입주 시 자격완화 부분은 검증 제외하나, 갱신계약 시 모든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 진행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 지 위 치	전체 건설호수	매입 관리호수	사용승인일
경암부향	전북 군산시 경암동 540-8(경촌1길 56)	880	717	'98.09.04
산북부향1차	전북 군산시 동아로 12(산북동 3616)	349	221	'97.03.04
산북부향2차	전북 군산시 동아로 17(산북동 3602-5)	96	67	'97.09.10
산북부향3차	전북 군산시 칠성5길 30(미룡동 852)	350	224	'98.04.11
산북부향4차	전북 군산시 칠성안4길39(산북동 3637)	410	290	'97.12.27
신풍부향	전북 군산시 신풍동 882-5(신풍길 6)	143	127	'97.10.01
조촌부향	전북 군산시 번영로188-22(조촌동771)	415	315	'96.09.13

2.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주택형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LH매입 관리호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합계		
경암부향	39	39.95	10.59	4.55	55.10	복도식/개별	717
산북부향1차	27	27.00	6.35	3.01	36.36	복도식/개별	35
	39	39.00	9.18	4.34	52.52		186
산북부향2차	30	30.40	10.71	0.51	41.62	복도식/개별	67
산북부향3차	32	32.81	7.80	4.60	45.21	복도식/개별	7
	39	39.95	9.50	5.60	55.05		217
산북부향4차	30	30.26	7.18	4.20	41.64	복도식/개별	16
	39	39.08	9.28	5.42	53.78		274
신풍부향	35	35.72	11.85	0.94	48.51	복도식/개별	127
조촌부향	39	39.96	10.30	4.48	54.75	복도식/개별	315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기본 임대조건(① 일반형, ② 전세형 중 택1)

단지명	주택형	① 일반형							② 전세형(월임대료X)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원)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천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계	계약금	잔금			보증금(천원)	월임대료(원)	계	계약금	잔금
경암부향	39	**9,330**	300	9,030	**82,630**	(+) 4,000	13,330	62,630	**25,856**	300	25,556
						(-) 6,000	3,330	100,130			
산북부향1차	27	**6,664**	300	6,364	**55,970**	(+) -	6,664	55,970	**17,858**	300	17,558
						(-) 4,000	2,664	67,630			
	39	**9,330**	300	9,030	**85,310**	(+) 4,000	13,330	65,310	**26,392**	300	26,092
						(-) 6,000	3,330	102,810			
산북부향2차	30	**6,997**	300	6,697	**69,970**	(+) 1,000	7,997	64,970	**20,991**	300	20,691
						(-) 4,000	2,997	81,630			
산북부향3차	32	**7,998**	300	7,698	**71,970**	(+) 1,000	8,998	66,970	**22,392**	300	22,092
						(-) 5,000	2,998	86,550			
	39	**9,330**	300	9,030	**90,650**	(+) 5,000	14,330	65,650	**27,460**	300	27,160
						(-) 6,000	3,330	108,150			
산북부향4차	30	**7,864**	300	7,564	**67,980**	(+) 1,000	8,864	62,980	**21,460**	300	21,160
						(-) 5,000	2,864	82,560			
	39	**9,330**	300	9,030	**87,970**	(+) 5,000	14,330	62,970	**26,924**	300	26,624
						(-) 6,000	3,330	105,470			
신풍부향	35	**10,095**	300	9,795	**96,910**	(+) 6,000	16,095	66,910	**29,477**	300	29,177
						(-) 6,000	4,095	114,410			
조촌부향	39	**9,330**	300	9,030	**86,650**	(+) 4,000	13,330	66,650	**26,660**	300	26,360
						(-) 6,000	3,330	104,150			

- **계약체결시 임대조건(① 일반형, ② 전세형 중 택1)을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한 임대조건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 당일 16시 이전까지, 잔금은 입주 전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단지의 기본임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에 적합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으로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 전환 가능**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 및 입주 절차 등

계약일정	계약절차	신청장소 등	세부내용
계약 전	주택열람 및 동호확인	희망단지 관리사무소	· 주택열람기간 : 2026.08.03(월) ~ 모집완료시 · 주택열람시간 : 평일 10시 ~ 16시 (공휴일 및 휴게시간 11:40~13:00 제외)
	↓		
	신청서류 발급	각 서류별 발급처	· 자세한 서류는 '7.신청서류' 참고 ※ 기본서류 미비 시 계약불가
	↓		
계약 당일	동호지정	요일별 접수처 상이 (p.1 신청장소 참고)	· 계약 당일 10:00~16:00 (공휴일 및 휴게시간 11:40~13:00 제외) · 10시 이전 도착자 : 순번 추첨 · 10시 이후 도착자 : 도착 순서대로 동호지정
	↓		
	신청서 작성		· 동호지정 후 신청서 작성
	↓		
	계약금 납부	은행/ATM/모바일 등	· 계약 당일 10:00~16:00 · 지정 계좌에 계약자 본인명의로 계약금 입금 ※ 계약금 미입금 시 자동 계약해지
	↓		
	서류제출 계약체결	요일별 접수처 상이 (p.1 신청장소 참고)	· 계약 당일 10:00~16:00 ※ 입주자격 최종 부적격시 계약 해지
	↓		
계약일 이후 약 4주 소요	주택 및 자동차 검증	범정부전산시스템	· 입주자격 적격 여부 확인
	↓		
계약일 이후 약 6주 소요	적격자 통보 및 부적격자 소명 안내	우편 통보	· 적격자 입주 안내 및 부적격자 소명 진행 ※ 입주자격 최종 부적격시 계약 해지
	↓		
계약일 이후 약 9주 소요	잔금 납부 및 입주 (적격자에 한함)	입주단지 관리사무소	·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 및 입주 ※ 최종 적격자에 한함

상담유형별 문의처				
관리사무소 (주택열람, 하자접수 등)	산북부향1차	☎063-465-1707	경암부향	☎063-446-3377
	산북부향2차	☎063-465-1707	신풍부향	☎063-468-8552
	산북부향3차	☎063-462-3992	조촌부향	☎063-452-2965
	산북부향4차	☎063-461-4822		
하자접수 및 보수진행 관련 문의	바로처리센터(☎1670-8572)			
계약 및 해약, 자격검증 등 일반문의	마이홈상담센터(☎1600-1004) 익산권주거복지지사(☎063-840-0900)			

5. 신청자격

신청접수일(계약체결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단, 아래 신청자격은 신청접수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table>
<tr><td>무주택</td><td>• 군산시 또는 연접지역(김제시, 익산시, 서천군)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이 없을 경우 허용
(단, 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은 허용)
- 1회차 재계약시에는 최초 계약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재계약 허용
- 2회차 재계약시에는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재계약 거절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td></tr>
<tr><td>세대구성원</td><td>■ 세대구성원의 범위
<table>
<tr><th>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th><th>비고</th></tr>
<tr><td>• 신청자</td><td></td></tr>
<tr><td>• 신청자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td></tr>
<tr><td>•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td><td rowspan="2">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r><td>•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r>
<tr><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able>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합니다.
<table>
<tr><td>외국인 배우자</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td><td rowspan="3">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td></tr>
<tr><td>외국인
직계존·비속</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td></tr>
<tr><td>태아</td><td>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td></tr>
</table>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td></tr>
</table>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자동차가액 적용, 소득·자산 금회 미적용)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th></tr>
<tr><td colspan="2">소득
(금회 배제)</td><td>
<table>
<tr><th rowspan="2">가구원수</th><th colspan="4">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th></tr>
<tr><th>70%</th><th>80%</th><th>90%</th><th>참고사항</th></tr>
<tr><td>1인</td><td>2,669,354</td><td>3,050,690</td><td>3,432,027</td><td rowspan="8">*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td></tr>
<tr><td>2인</td><td>4,106,389</td><td>4,693,016</td><td>5,279,643</td></tr>
<tr><td>3인</td><td>5,717,900</td><td>6,534,743</td><td>7,351,586</td></tr>
<tr><td>4인</td><td>6,161,541</td><td>7,041,762</td><td>7,921,982</td></tr>
<tr><td>5인</td><td>6,528,890</td><td>7,461,588</td><td>8,394,287</td></tr>
<tr><td>6인</td><td>6,934,384</td><td>7,925,010</td><td>8,915,637</td></tr>
<tr><td>7인</td><td>7,339,879</td><td>8,388,433</td><td>9,436,987</td></tr>
<tr><td>8인</td><td>7,745,373</td><td>8,851,855</td><td>9,958,337</td></tr>
</table>
</td></tr>
<tr><td rowspan="2">자산</td><td>총자산가액
(금회 배제)</td><td>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td></tr>
<tr><td>자동차가액
(금회 적용)</td><td>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td></tr>
</table>

- **소득기준 가산**
  -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자산기준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출산자녀는 '23.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출산자녀 수	총자산 가액(금회 배제)	자동차가액(금회 적용)
0명(기준)	34,500만원	4,542만원
1명	37,900만원	4,996만원
2명	41,300만원	5,451만원

※ [필독] 소득 · 총자산 완화 대상자 ※

- 최초 재계약 시부터 소득·총자산에 대한 입주자격 충족 여부 검증하며, 완화 입주자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에 따른 재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 및 총자산요건 완화모집 입주자의 경우 1회차 재계약 시 소득·총자산 기준 미충족하더라도 임대조건 할증 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2회차 재계약 시 정상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소득·총자산 기준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을 허용합니다. (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속 재계약 가능)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총자산 산정시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6. 현장방문 신청장소

신청장소	군산임대상담실 (2번째, 4번째 주 수요일)	LH 익산권주거복지지사 (2번째, 4번째 주 수요일 제외 평일)
위 치	군산시 동아로 12, 산북부향1차 108호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금오빌딩 5층
약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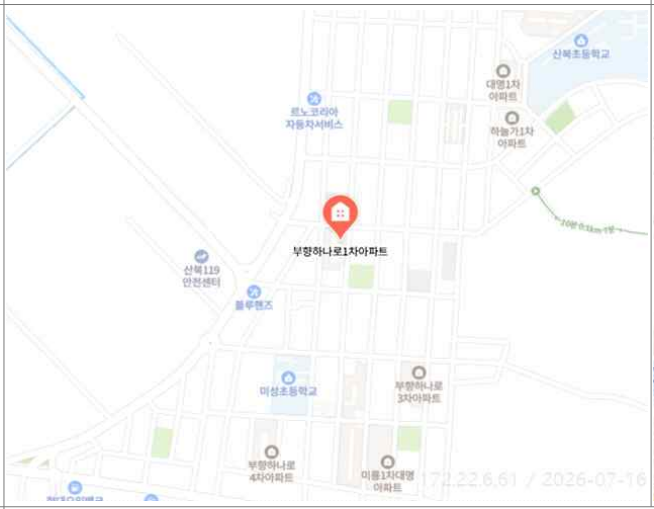	
운영시간	평일 10시 ~ 16시(공휴일 및 휴게시간 11:40~13:00 제외)	

7. 신청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모집공고일(26.07.30) 이후 및 계약체결 당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기본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2인 모두 각각 제출	1통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제출대상)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 배점을 받고자 할 경우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 중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 중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통 (행정복지센터)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붙임 또는 접수처 구비)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LH)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 증명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붙임 또는 접수처 구비)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붙임 또는 접수처 구비)
	각서 및 확약서, 대기자명부 제외확인서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붙임파일을 내려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붙임 또는 접수처 구비)
해당자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제출대상) 신청자와 주민등록표가 분리된 신청자의 배우자**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1통 (행정복지센터)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산정을 위해 반드시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익산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익산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발급방법)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1통 (행정복지센터)
	중증장애인 확인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편의시설 신청 희망자	1통
	기타서류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발급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로 신청은 가능함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안내

- **동호지정 당일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계좌를 개별 안내드리며, **당일 지정시간 내(10:00~16:00) 계약금이 미입금될 경우 자동 신청무효가 되어 등록명부에서 삭제 및 동호지정 취소 처리**됩니다.**(현장 현금수납 불가)**
- 잔금납부 및 입주안내 등은 입주자격 검증 후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보해드리니, 계약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9. 유의사항

<table>
<tr><th>관련항목</th><th>유의사항</th></tr>
<tr><td>임대대상
및 조건</td><td>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6%(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에는 3.5%)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 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table>
<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
<tr><th>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th><th>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th></tr>
<tr><td>10%이하</td><td>100%</td><td>110%</td></tr>
<tr><td>10%초과 30%이하</td><td>110%</td><td>120%</td></tr>
<tr><td>30%초과 50%이하</td><td>120%</td><td>140%</td></tr>
<tr><td>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기준 초과인 경우</td><td colspan="2">140%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td></tr>
</table>
</td></tr>
<tr><td>신청자격</td><td>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소형·저가주택 허용, 해당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
•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취소되며 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입주불가)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및 제53조를 따릅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td></tr>
<tr><td>중복입주
금지</td><td>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는 세대분리돼있더라도 중복입주에 해당할 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td></tr>
<tr><td>신청서류</td><td>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및 계약체결일 14일 이내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td></tr>
<tr><td>당첨자 선정
및 계약안내</td><td>
• 계약체결 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단순변심 등으로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td></tr>
</table>

기타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주택(*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건출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1.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내역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임대문의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 1600-1004	
당첨자 ARS	☎ 1661-7700	
인 터 넷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수처(약도)	군산임대상담실 (2번째, 4번째 주 수요일)	LH 익산권주거복지지사 (2번째, 4번째 주 수요일 제외 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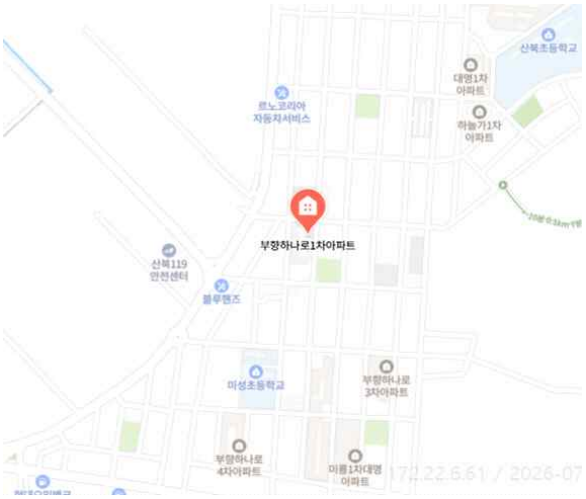	
운영시간	평일 10시 ~ 16시(공휴일 및 휴게시간 11:40 ~ 13:00 제외)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 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7.30.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붙 임	신청 및 계약 서류(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용/자격검증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안내 및 관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 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확인 내용

신청인 본인은 LH가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이하 동일)의 입주자 모집에 청약신청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 동일한 공급유형 내에서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의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 처리됨**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처리 순서기준】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 중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

2.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시, 모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됨

【입주여부 판단기준】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일을 입주일로 판단

신청인 : (인)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1조(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방지)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각각을 말한다)에 중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입주대기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입주대기자 명부 관리) 제3항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해당 예비입주자를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에 제외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원	[출자자]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대인]	
				원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 아니오 □		원	[차주]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각 서

주택의 표시 : **아파트** **동** **호**

상기 본인(세대구성원포함)은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분양권(입주권등)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공사에서 **주택 정기검색 시 분양권등의 주택소유가 확인될 경우 상기 주택에서 자진 퇴거**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이를 위배할 시 본인이 법적책임을 지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각 서

주택의 표시 : 아파트 동 호

본인이 위 표시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만일 이를 위배할 시는 해약 및 자진퇴거는 물론 관계법규에 따른 여하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불법전매 또는 전대(일부 전대포함,이하 같다)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전매, 전대 등 불법입주 방지를 위한 입주자 실태 조사 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사진 제출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3. 본인이 입주 부적격자임을 정부나 해당기관이 귀 공사에 통보한 경우에 귀 공사의 계약해지 및 퇴거요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귀 공사가 정한 기간내에 자진퇴거 하겠습니다.
4. 본 주택은 재임대되는 주택으로 도배, 장판 등 마감자재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대로 입주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확 약 서

동 확약서의 내용은 _____년 ___월 ___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계약조건” 제16조에 따른 특약으로서, 확약자는 해당내용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본래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모집한 공고에 따른 입주자로서 재계약시 아래와 같은 특수조건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에 따른 재계약 거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1. **(공통)** 재계약을 위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부금을 완납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해당 주택을 명도하여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소득·총자산배제)**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주택완화)** 입주자모집공고 전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이 1회만 가능하며,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확 약 자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계 약 동 호 : 아파트 동 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확 약 서

본인은 아파트 동 호의 계약자로서 동 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입주자격을 검증함"에 따른 것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1. 향후 **입주자격에 흠결이 있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사')가 동 계약을 **직권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제(해지) 시 LH는 **위약금 및 계약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의**하며, 입주자격 흠결이 아닌 **계약자의 입주자격 검증관련 보완서류 미제출, 계약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임의 해약 등의 경우**에는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위약금을 **LH공사가 징수함**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LH 공사로부터 최종 입주가능 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계약주택에 대한 이사일정 등 입주계획을 세울 것이며,
   입주가능 여부를 **최종 통보받기 전 임의로 이사 일정 등을 세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정 차질,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해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확 약 자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대기자 명부 제외사항 확인서(계약용)

확인자 (임차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본인(또는 배우자)은 단지에 계약 후 입주할 시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모든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등)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함을 확인합니다.

※ 참고사항

입주 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함

년 월 일

확인자(임차인)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국민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_____ 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1) 대표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상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 ☐☐☐☐☐☐☐
- 연락처 :

□ **(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연락처 :

구분	동의	동의내역
개인정보 · 금융정보	□	상기 (1), (2)는_____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관계	□	상기 (1), (2)는_____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1) 대표신청인 : (인)

(2) 예비배우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국민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_____ 국민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할 예정인 경우 배우자 비고란의 '분리세대'에 체크하고, 양쪽 세대에 속할 예정인 사람을 모두 기재

(각 구성원의 비고란에는 신청인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배우자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체크)하십시오.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예정) 세대주와의 관계	비고
본인 (필수기재)		-	*(예시)본인*	
배우자 (필수기재)		-	*(예시)배우자*	신청인과 동일세대□ 분리세대□
(예시)부		-	*(예시)부*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년 월 일

대표신청인 : (인)

예비배우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위 임 장(해당시)

□ 주택의 표시 : _____ 국민임대주택

위 표시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에 관하여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하고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자(신청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처 :

수 임 자(대리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처 :

붙 임 :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1. 당첨자 성 명		2. 당첨자 생년월일	
3. 주 소	(전화번호 :)		
4. 입주세대	아파트 동 호(규모 : 전용면적 ㎡)		
5. 주거약자 성 명		6. 주거약자 생년월일	
7. 구 분	① 65세 이상인 사람 ( ), ②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 ), ③ 청각장애인 ( ), ④ 시각장애인 ( ), ⑤ 상이등급 3급 이상 판정받은 자 ( )		

8. 신 청 내 용

구분	항 목	시 설 내 용	신청	대상
현관	① 마루굽틀 경사로	• 휠체어 이용자 등의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②
욕실	② 단차 없애기	•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①~⑤
	③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 출입구 폭 80㎝ 이상 확대(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 안여닫이 → 밖여닫이		
	④ 좌식 샤워시설	• 욕조 미설치, 좌식의자 및 안전 손잡이 (L자형 1개, — 자형 1개)		
	⑤ 좌변기 안전손잡이	•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 설치(L자형 1개)		
	⑥ 수건걸이 높이 조정	•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⑦ 높낮이 조절 세면기	•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기 설치		
	⑧ 좌변기 옆 여유공간	• 휠체어 이용자 등을 위해 좌변기 옆 75㎝ 이상의 여유공간 확보		②
주방	⑨ 좌식 싱크대	• 휠체어 · 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①~⑤
	⑩ 가스밸브 높이 조정	•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거실	⑪ 비디오폰 높이 조정	•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⑫ 비디오폰 점자표지	•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④,⑤
	⑬ 시각경보기	• 비상상황 발생시 청각장애인이 인지가 가능하도록 시각경보기 세대 내 1개소 설치		③
	⑭ 야간센서등	• 야간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②
	⑮ 조명밝기 조정	• 거실 조명 밝기(600~900럭스(lux))		③
침실	⑯ 조명밝기 조정	• 침실 조명 밝기(300~400럭스(lux))		③
기타	⑰ 음성유도신호기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출입구에 설치		④

※ 편의증진시설 제공 대상
- 최초 입주자로서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에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3제1항에서 정한 주거약자가 있는 경우로서 세대주가 희망하는 가구

※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희망한 편의증진시설 내용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귀하